

## 목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8. 7. .

제 출 자 : 목 포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행정절차법 (법률 제5241호 '96. 12. 31)이 19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○ 과태료 처분시 행정절차법 인용근거 명시(안 제5조 제2항)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# 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5. 관계법령 :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

### 6. 관계부서의견 : 해당없음

### 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### 8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'98. 6. 15 ~ 7. 6 (22일간)

○ 결 과 : 해당없음

### 9. 조례.규칙심의위원회 : '98. 7. 10 (원안가결)

**목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**

목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

현행	개정안
<p><b>제5조(과태료 처분통지등) ①(생략)</b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등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5조 (과태료 처분통지등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